

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신청인	성명(한글) (한자)	생년월일	
	주소		
	희생자와의 관계 의	전화번호	

희생자	성명(한글) (한자)	생년월일	성별 []남, []여
	희생 유형	희생자 결정일	
	당시 주소		

유족 결정 대상자	성명(한글) (한자)	생년월일	희생자와의 관계 의
	주소		

※ 유족 결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에 기재합니다.

「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.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. 희생자의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, 제적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) 1부 4. 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(희생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----



